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,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2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16 제1호의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평가기간란 중 “2022년 9월 30일”을 “2024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2]

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(제30조제3항 관련)

총계	41
일반직 계	41
고위공무원단	1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3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7
행정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	8
보건주사 또는 식품위생주사	1
행정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6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또는 농업서기	5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	4
운전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3
임기제 교수요원(가급)	1